

2020~2021 감정평가사 법전 정오표

초판인쇄 2020.03.20.

초판발행 2020.03.25.

페이지	수정 전	수정 후
554	<u>전면개정 2018.2.28.</u>	<u>일부개정 2020.2.19.</u>
568	제32조 제4항 중 ④ ~ <u>비용(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환지비율) 등을</u> ~	④ ~ <u>비용 등을</u> ~
572 ~ 573	제36조 제2항 제2호 중 2.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이 “대” <u>및 이와 비슷한 농경지 또는 산지인 경우에는</u> 그 표준적인 이용상황과 비슷한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적정가격에 <u>도로의 지반조성 등에 통상 필요한 비용 상당액과 위치조건 등을 고려한 가격 수준으로 결정한다. 다만,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이 경지정리사업지구 안에 있는 전·답 등 농경지인 경우에는 도로의 지반조성 등에 통상 필요한 비용 상당액은 고려하지 아니한다.</u>	2.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이 “대” <u>또는 이와 비슷한 용도의 것인 경우에는</u> 그 표준적인 이용상황과 비슷한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적정가격에 <u>위치조건 등을 고려한 가격수준으로 결정한다. 이 경우 도로의 지반조성 등에 통상 필요한 비용 상당액은 고려하지 아니한다.</u> <u><단서 삭제></u>
574	제37조의2 제2항 제2호 중 2.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이 “대” <u>및</u> 이와 비슷한 용도의 것인 경우에는 그 표준적인 이용상황과 비슷한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적정가격에 <u>환지비율과 위치조건 등을</u> 고려한 가격수준으로 결정한다. 이 경우 도수로의 지반조성 등에 통상 필요한 비용 상당액은 고려하지 아니한다.	2.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이 “대” <u>또는</u> 이와 비슷한 용도의 것인 경우에는 그 표준적인 이용상황과 비슷한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적정가격에 <u>위치조건 등을</u> 고려한 가격수준으로 결정한다. 이 경우 도수로의 지반조성 등에 통상 필요한 비용 상당액은 고려하지 아니한다.
578	제40조 제2항 제2호 중 2.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이 “대” <u>및</u> 이와 비슷한 용도의 것인 경우에는 그 표준적인 이용상황과 비슷한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적정가격에 <u>환지비율과 위치</u> , 규모, 지형·지세, 용도지역등을 고려한 가격수준으로 결정한다.	2.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이 “대” <u>또는</u> 이와 비슷한 용도의 것인 경우에는 그 표준적인 이용상황과 비슷한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적정가격에 <u>위치</u> , 규모, 지형·지세, 용도지역등을 고려한 가격수준으로 결정한다.
588	<u>맨끝에 부칙 추가</u>	<u>부칙 <2020.2.19.></u> <u>이 기준은 2020. 3. 1.부터 시행한다.</u>